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4. 1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4월 3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4월 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 4.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이철호)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 관련 근거조항 등을 개정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 정비(안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한 감면사항 추가
- 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 근거조항 정비(안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2013.7.26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 개정(2013.7.1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 감면률 적용기한 연장(안 부칙 제2조)
 -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 2012.12.31 → 2014.12.31
 -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013.12.31 → 2014.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5조, 제16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하도록 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개정 조례안은 구세감면 규모의 변동없이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서 위임한 사업의 양수 등 방식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조정하였으며,
 - 안 부칙 제2조에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및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 안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부가가치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종교단체의 의료기관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참고로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우리구의 2013년도 기준 재산세 감면금액은 총 2억 198만 5천원으로, 이중 종교단체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실적은 없으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4건에 2억 156만 4천원으로 조사되었음.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재산세 감면현황(2013년도 기준)]

조 문	감면대상	감 면 현 황		비 고
		건수	금액(천원)	
	합 계	5	201,985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	-	
제4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1	421	사러가
제5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제6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제7조	중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	
제8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제9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	-	
제10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4	201,564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86 호
----------	---------

제출연월일 : 2014.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 관련 근거조항 등을 개정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 정비 (안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한 감면사항 추가

나. 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 근거조항 정비 (안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2013.7.26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 개정(2013.7.1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다. 감면률 적용시한 연장 (안 부칙 제2조)

-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 2012.12.31 ➔ 2014.12.31

-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013.12.31 ➔ 2014.12.31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안 제15조, 제16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2.20.~2014.3.12.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제 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을 “제 121조의2제4항·제5항·제12항에 따른”으로, “면제하고,”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에 따른 재산세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본문”을 “및 제1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본문”을 “및 제12항제4호”로 한다.

제6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를 “제12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구청장에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로, 단서 중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를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신청을 받은”을 “따른 신청을 받을”로 한다.

제15조 후단 중 “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로 한다.

제16조 중 “제96조”를 “제180조”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영등포구 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p> <p>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p> <p>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p> <p>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p>	<p>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제121조의2제4항·제5항·제12항에 따른 ----- ----- -----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에 따른 재산세는 ----- -----, ----- ----- ----- 1.----- ----- 및 제12항제3호----- ----- 2. ----- ----- 및 제12항제4호----- -----</p> <p>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 ----- ----- ----- ----- 제12조----- ----- -----</p>

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8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에 -----
-----.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규정에도 -----
-----.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생략)

-.

② ----- 따른 신청을 받을 -----

-----.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

----- 제127조 -----.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

----- 제180조 -----.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현행과 같음)